

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

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

1. 제안이유

- 가. 2026년 1분기 노사협의회 협의 안건(근로자측 제안)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그간 조직개편 등 대규모 인사 시 사장 방침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해 온 순환보직 기준(동일부서 4년 이상 근무자 우선 고려)을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- 나. 휴직자의 결원 보충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「지방공기업 인사·조직 운영기준」의 개정 내용(2026. 5. 1. 시행)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규모 인사 시 순환보직 대상자 기준 변경(안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)
- 1) 조직개편 등 대규모 인사 시 원칙적으로 순환보직 시키는 대상을 동일직무 및 동일부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서 동일부서 4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변경하고, 이와 관련한 항 체계 정비 및 일부 자구 수정

※ [관련참조] 인사규정 제16조(순환보직) 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.

- 나. 결원 보충이 인정되는 육아휴직 기준 완화(안 제74조제1항)
- 1) 결원 보충이 인정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6월에서 3월로 완화
- 다. 출산휴가·병가와 연계하여 휴직 시 결원 보충 기준 보완(안 제74조제2항)
- 1) 결원 보충 시점에 대한 의미 명확화
- 2) 병가와 연속하여 3월 이상의 요양휴직을 명하는 경우 요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휴직기간을 합하여 6월 이상일 때 결원 보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규정 : 인사규정 제1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부서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

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사장은 조직개편 등 대규모 인사발령 시 직원의 부패방지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해 동일부서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순환보직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또는 연속성이 요구되는 직무 등 별도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환보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예외 직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발령 시 공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5조의2제3항,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,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.

제7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휴직기간 또는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기교육, 외부기관 파견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. 다만,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3월 이상으로 한다.

제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

1. 출산전후휴가와 3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
2. 병가와 연속되는 3월 이상의 요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 요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요양휴직기간을 합하여 6월 이상인 경우

부칙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25조의2(조직개편, 순환보직 운영기준 등) ① (생 략) ② <u>사장은 조직개편 등 대규모 인사발령 시 직원의 부패 방지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해 동일직무 및 동일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실시하되, 전문성 및 연속성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순환보직 대상 직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발령 시 공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장이 따로 정한다.</u> <u><신 설></u> ③~⑤ (생 략)	제25조의2(조직개편, 순환보직 운영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 음) ② <u>사장은 조직개편 등 대규모 인사발령 시 직원의 부패 방지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해 동일부서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순환보직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</u> ③ <u>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또는 연속성이 요구되는 직무 등 별도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환보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예외 직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발령 시 공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장이 따로 정한다.</u> ④~⑥ (현행과 같음)	▶ 2026년 1분기 노사협의회 의결 결과 반영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74조(휴직자 등의 결원보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·파견일로부터 해당 휴직·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,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 이 경우 결원의 보충은 임시직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. 1. <u>휴직기간 또는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기교육, 외부기관 파견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</u> 2. (생략) ② <u>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 다만, 출산전후휴가 또는 병가에 이어 해당 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병가 개시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</u> 1. <u>출산전후휴가와 연계하여 3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</u> 2. <u>병가와 연계하여 3월 이상의 요양휴직을 사용하는 경우</u> ③ (생략)	제74조(휴직자 등의 결원보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휴직기간 또는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기교육, 외부기관 파견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. 다만,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3월 이상으로 한다.</u> 2.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</u> 1. <u>출산전후휴가와 3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</u> 2. <u>병가와 연속되는 3월 이상의 요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 요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 기간과 요양휴직기간을 합하여 6월 이상인 경우</u> ③ (현행과 같음)	▶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개정 내용 반영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④ (생략) 1.~3.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 1.~3. (현행과 같음)	